

우리 협회, 한·중간 협조 요청 서신 접수

지난 9월2일 중국 호북대의 건설센터 소춘발로부터 우리 협회에 한·중간 협조를 요청하는 서신이 접수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신내용 요약

중국 호북대의 건설 상담센터(CHIC-중국 호북대의 연합건설업 대리부)

①CHIC는 화합, 기술축적의 정신하에 각국 정부, 민간 기업과 교류를 희망

②주요업무는 건축, 교통, 방직, 수력, 기계, 선박등의 시공, 생산기술 등을 대행

③관리요원, 기술요원, 노무자, 전문요원의 구직 희망

④국내의 많은 협력기업의 투자와 교류 희망

중국 호북 대외 건설 상담센터 호북성 건설 전문인력 개요

역사상 호북은 “초 문화”의 요람이며, 그와 더불어 많은

인재들이 난 곳이기도 합니다.

중국의 과학·교육·문화·다방면의 중심지이며, 현재 전국 과학 기능 실력 3위에 올라있고, 61곳의 학원, 1,300여 곳의 각종 연구소, 13곳의 국가 부설 실험실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전문인력이 100만명에 달하고, 특히 광속 통계 생물 공학, 전자공학, 레이저, 신소재, 광학등 최첨단 학술 연구에선 [제3차 녹색혁명]으로 까지 불릴 국제적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61곳의 학원에는 정, 부 교수 7,000여명이 800개의 과목을 지도하고 있고, 그중 11곳의 103개 과목에는 박사 학위를 지정, 선발해 연구를 돕고 있습니다. 현재 본 성의 전문 기능인과 연구생은 25만명에 육박하고 있어 과히, 중국의 두뇌라 할 수 있겠습니다.

호북은 예로부터 건축의 중심지로서, 현재 건축 시험을 실시하고 있어(디자인, 시공, 공정건설, 도시기획, 관리)패스한 인재만도 120만명이고,

각계의 17%가 전문가들이며 고정기술 전문가 2만4천명중 고급건축사와 고급설계사가 1만명에 이릅니다. 종전의 공인 설계인원 4만여명, 건축시공 업체 3,000여곳, 건설 관리기구 27개의 직원 80만여명과 부동산 개발 기업(대의 합작포함) 1,300여곳 직원 10만여명, 장비 9만여대와 20억원의 자산이 근10년간 낸 이익은 70억원을 웃돌고 매년 22.4%성장을 자랑합니다.

또한 여러곳의 전문대학, 학원, 공업학교들이 년 6,800명의 졸업생을 배출하고 있으며, 국가는 호북3곳에 보증기관을 설립하고, 시립으로는 9개의 보증기관을 증설하여 대내, 외의 신용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CHIC는 중국 호북대의 연합건설업 대리부의 준말로써 중국 호북 건설 상담중심과 통합 관리기구를 발족하였습니다.

CHIC는 “신용, 질의 보증, 낮은 이익”을 원칙으로 “진보, 화합, 기술 축적”의 정신하에 각 국회 정부관서, 민간

회사, 상공기업과 해외 교역을 도와 각 국(지역)의 발전을 도모 할까합니다.

CHIC의 주요 업무는 정부 기관이나, 민간, 합작 형식으로, 건축, 건축자재, 방직, 수

력, 전력, 기계, 통계, 전기, 경공업, 의료산업, 공예 미술, 산림, 요식, 항공, 원유채취, 수질 정화, 문화체육, 선박제조 등이며, 공정항목의 측정, 시공, 디자인과 생산기수 요원

과 노무자를 파견하고, 각 우수한 전문 요원의 견학이나 구직을 돕고 있습니다. 국내외 건설 합작기업들의 투자와 교류를 희망합니다.

질의 및 회신

건축 현장 배치

우리 협회는 지난 8월18일 아파트 옥외 공동구 설비공사 현장에 건축설비기사를 현장기술자로 배치함이 타당한지의 여부에 대한 질의를 건설부에 했었다.

다음 내용은 우리 협회의 질의와 건설부의 회신이다.

[질의 내용]

아파트 옥외공동구 설비공사 현장에 건축설비기사를 현장기술자로 배치함이 타당한지의 여부

[우리 협회 의견]

건설업법 제33조[건설기술자의 배치]에 의거 설비공사 현장에 배치되는 건설기술자로서 건설기계기사, 공조냉동기계기사, 건축설비기사를 현장에 배치하고 있는 것이 설비업계의 현 실정이다.

아파트 옥외 공동구 설비공사는 건축설비공사의 주된 설비전문공사이며, 건축설비기사는 건축설비에 관한 공기조화, 위생설비 등을 전공하고 기술자격을 취득한 건설기술자로서, 설비공사 현장배치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판단됨.

따라서 건축설비기사를 아파트 옥외공동구 설비공사의 현장에 건설기술자로 배치함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회신내용]

건설업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의 현장에 배치하여야 할 건설기술자는 동법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공사의 주된 공사종목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자이어야 하므로, 공사현장에 건축설비기사를 배치하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공사의 설계내용, 시공기술상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발주자가 사실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공사가 옥외 기계설비공사를 말하는 것이라면 그 공사내용 등에 따라 공조냉동기계사 또는 건축설비기사가 배치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